

2020년도 제3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2. 15.(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임형주 위원,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34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649건(안건번호 제2020-166231호~16806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66231호~166255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임.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 및 구매희망자들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66256호~166271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어문, 영상 저작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66272호, 166273호는 자막 공유 사이트 및 블로그에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을 게시한 사안임. 우리말 자막파일은 영상 저작물의 불법복제물과 보완재 관계에 있고 영상과 결합한 후 합법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점,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하여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66274호~166279호는 블로그에서 제공되는 일본 특촬물, 애니메이션 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528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현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3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34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2쪽에 온라인서비스명, 4쪽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게시글 제목, 답변자명, 6쪽에 저작물명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로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미리 회의록에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신고 건은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C 위원, D 위원,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명,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게시글 제목, 답변자명, 저작물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 위원, B 위원, D 위원, C 위원: 해당 없음.

- A 위원: 심의대상 안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A 위원님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3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9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64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66231호~16625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오픈마켓 또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음.

(순번 1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오픈마켓인 '▶▶▶'에서 새로운 버전의 '○○○○○○ ○○ ○○○'를 193,500원에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고 있음.

(순번 6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쇼핑포털인 '◇◇◇◇'에서 '◆◆◆◆◆ ◆◆'를 316,920원에 해외배송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상세페이지에는 상품의 구성품을 보여주고 있음.

(순번 7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개인쇼핑몰인 '▣▣▣▣▣▣▣▣▣'에서 '▣▣▣▣▣'를 243,700원에 해외구매대행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순번 8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 ☆☆☆'에 입점한 업체에서 '●●●●●●●●'를 175,000원에 중국구매대행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인공 지능 음성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임.

(순번 12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개인 쇼핑몰인 '♣♣♣♣'에서 '♡♡♡♡♡ ♡♡'를 179,910원에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임.

(순번 13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쇼핑몰인 '■ ■■■■■■■■■'에서 '☆☆☆☆☆ ☆☆' 제품을 192,300원에 판매 중이며 미니키보드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순번 14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쇼핑몰인 '◇ □◇□'에서 '○○○ ○○○○○ ○○○○○ ○○'을 관부가세포함된 금액인 396,900원에 판매 중임.

(순번 15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오픈마켓인 '☆★☆☆'에서 '◁◁◁◁◁ ◁◁'를 156,310원에 판매 중임.

(순번 17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오픈마켓인 '♣♣'에서 '△▲△▲△▲'를 271,400원에 해외구매대행업체가 판매하고 있음.

(순번 24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인터넷 쇼핑몰인 '○○○○○○'에서 '◀◀◀◀◀ ◀◀'을 176,900원에 판매 중임.

(순번 25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에서 '☆☆☆☆'를 209,000원에 해외직구로 판매하고 있음.

본 건 기기의 자세한 작동원리 및 기능은 기술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심의대상인 스트리밍 기기의 판매는 복제권, 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함.

법원은 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거나 침해금지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건번호 제2020-166231호~166246호, 166254호, 166255호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제2020166247호~166253호 안건에 대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님이 회피한 후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음.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먼저 안건번호 제2020-166231호~166246호, 166254호, 16625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C 위원: 스트리밍 기기에서 VOD 시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VOD를 시청할 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VO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중국의 서버를 통해 전 세계 방송이나 VOD를 수집해서 스트리밍 기기를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A 위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함. 가결 의견임.
- B 위원, E 위원, C 위원: 이견 없으며, 가결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6231호~166246호, 166254호, 16625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다음으로 안전번호 제2020-166247호~166253호에 대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음.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님은 법률에 따라 회피해주시기 바람.
- A 위원: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에 따라 회피함)
- E 위원, B 위원, C 위원, D 위원: 위의 안전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6247호~166253호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가결 의견임.
- B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를 권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E 위원: 각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복제, 전송하여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음.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함.
- C 위원,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6256호~16627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66272호, 166273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자막 공유 사이트와 블로그에 영화 '△△'의 자막 파일이 각 게시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음.
(순번 42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영화의 한글자막을 자막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자막 파일과 동일한 영상 파일

이 같은 폴더에 있으면 영상 실행 시 자동으로 자막이 출력됨.

(순번 43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블로그 이용자가 인터넷에 있는 자막 파일을 본인의 블로그에 게시하였음. 해당 블로그에 광고가 게재되어 있어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영화 대사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막을 제작해서 전송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세한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 기재로 대신하겠음.

관련 법리 및 판례, 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에 대한 정리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66272호, 16627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A 위원: 관리자가 권리 보호를 위해 직접 신고한 점, 자막 파일을 게시하여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가결 의견임.
-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자막파일과 불법복제 영상물이 서로 결합하여 해당 시장의

- E 위원: 블로그에서 제공 중인 일본 특촬물, 애니메이션을 불법복제하여 스트리밍 형식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가결 의견임.
- D 위원, A 위원, B 위원,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6274호~16627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66280호~16806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불법 복제한 게임, 어문, 음악,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그 중 일부 안전을 설명하겠음.
(영화 ‘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쿨’을 110포인트에 판매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11. 27.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된 국내 미스터리 영화임.
(방송 ‘엄브렐러 아카데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미국드라마 ‘엄브렐러 아카데미’ 시즌1 전체를 1,02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엄브렐러 아카데미 시즌1

은 넷플릭스에서 2019. 2. 15. 총 10부작으로 공개되었음.

(게임 '하데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하데스' 무설치 버전을 470포인트에 판매 중임.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에서 2020. 9. 17. 출시되었으며 판매 가격은 26,000원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전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심의안전 목록과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166280호~16806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A 위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가결 의견임.
- B 위원: 이견 없으며 가결 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필요성이 인정됨. 가결 의견임.
- E 위원,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6280호~168062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166231호~16806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3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3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2. 18.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